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5호 2020. 7. 7.(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11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1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하동군 조례 제2413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21
○ 하동군 조례 제2414호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5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23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3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10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2020-3호)····· 47
○ 하동군 고시 제2020-10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50
○ 하동군 고시 제2020-10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51
○ 하동군 고시 제2020-10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52
○ 하동군 고시 제2020-11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3
○ 하동군 고시 제2020-111호 소하천점용 허가고시(강영*)····· 56
○ 하동군 고시 제2020-11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2020-4호)····· 57
○ 하동군 고시 제2020-115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이정*)····· 60
○ 하동군 고시 제2020-116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박용*)····· 61
○ 하동군 고시 제2020-117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2020-5호)····· 62
○ 하동군 고시 제2020-118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이영*) 65
○ 하동군 고시 제2020-120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67
○ 하동군 고시 제2020-124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박현*)····· 81
○ 하동군 고시 제2020-125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82
○ 하동군 고시 제2020-1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1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0-812호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3
○ 하동군 공고 제2020-822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00
○ 하동군 공고 제2020-932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763호 하동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16
○ 하동군 공고 제2020-794호 불무마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123
○ 하동군 공고 제2020-803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 재공고 126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0-16호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133
○ 하동군 공고 제2020-846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고시송달 공고····· 135
○ 하동군 공고 제2020-867호 노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138
○ 하동군 공고 제2020-879호 공인 신조 공고·····140
○ 하동군 공고 제2020-862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141
○ 하동군 공고 제2020-863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144
○ 하동군 공고 제2020-883호 2021년도 어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147
○ 하동군 공고 제2020-9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계항지구)··151
○ 하동군 공고 제2020-924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156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1 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을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자)”를 “(사용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군민”을 “군수는 군민”으로, “사용을 허가”를 “사용신고를 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신청시”를 “사용신고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신청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자”를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사용기간 연장신청(재계약)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허가 신청”을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신고를 한

자”로, “사용허가일”을 “사용신고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권의 취소)”를 “(사용권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취소”를 “사용을 중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장을 신청”을 “연장신고”로 한다.

제11조 중 “사용자”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봉안당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리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유골이 공설봉안당에 봉인된 경우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봉안당 사용료 및 환급비율(제6조부터 제8조 관련)

1. 봉안당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인 조 대리석 안치단	1구당 /30년	100,000원/군내 거주자 30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500,000원/상기자 외	1구당/30년	150,000원
목 재 안치단	1구당 /30년	120,000원/군내 거주자 36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800,000원/상기자 외	1구당/30년	150,000원

※ 군내 거주자는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는 군내에 10년 이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함.

※ 사용기간 연장(재사용)시 관리비만 납부

2. 사용료 환급비율(제7조 및 제8조 관련)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별지 제1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 신고서(제4조 관련)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원인		본관(한문)	
신고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시 설 명		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공설봉안당 사용 신고필증(제4조 관련)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일 자	
	주 소					
신고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시 설 명		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 연장 신고서(제7조 관련)

사망자	성 명		사 망 일 자		
	안치단 번호		안치연월일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남/여)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폰	
	주 소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연장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히동군수 귀하

공설봉안당 사용 연장 신고필증(제7조 관련)

사망자	성 명		사 망 일 자		
	안치단 번호		안치연월일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남/여)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폰	
	주 소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연장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신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
제5조(사용자) ① 제4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 군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대상 등) ① -------- ---------- ---------- ----------. ---군수는 군민---------- ---------- 사용신고를 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등) 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 ---------- 사용신고 ---------- ---------- -- ------별표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③ ---------- ---------- 사용신고 - ---------- ----------.

한다.	
④ 봉안당 사용신청시 부부(夫婦)단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계약시부터는 부부 중 먼저 들어온 유골을 기준일로 하여 1구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 사용신고 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 ---------- 신고하는 ---------- -------. -------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②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으로 화장하였을 경우는 군수가 봉안묘(술상공동묘지내 위치)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 5년------.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③ ----------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사용 허가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 ---------- ---------- ---------- ---------- ----------. - ---------- -------.
④ 봉안당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불은 별표와 같다.

경과 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 비율	50%	30%	10%	0%

제8조(사용권의 소멸) ①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① ------ --- 사용신고를 한 자------- ---------- ------ 사용신고일---------- ---------- ---------- ---------- --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사용권의 중지) -------- ----------

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을 중지-------- ---. 1. (현행과 같음) 2 . ---------- ---------- 연장신고 ---------- ----------
제11조(유골안치) 사용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유골안치)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2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 그 밖의 사항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의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제14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적용례)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면제 방법, 적용 범위, 감면세액의 추징, 자동차의 소유 여부 등 그 밖의 사항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

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3 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나.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다.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라.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마.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바.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슬로시티 관련 이념·철학·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4.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면 주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회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4 호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알프스 하동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다목적실
3. 매점 및 매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하동군 홈페이지 등에 최소 7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5.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병(兵), 예비역 및 보충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

다)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 선정 등)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

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제15조 관련)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설 비	연 면 적	㎡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		㎡
	주요시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

법 인(단체명)		(☎)			
소 재 지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등록번호)				
기 간		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사 유					
기 타 사 항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23 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비·도·군비 보조단체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조사·감정·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일반기준

제8조(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및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반장, 감사공무원, 다른 부서의 직원,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은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반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군수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4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 내역을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을 감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감사 종결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

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또는 기관에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한

다.

제1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 중 징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또는 결정내용이 처분요구와 다르게 현저히 부당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 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2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추천)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4조(재심의 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정보 관리) 군수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취지에 맞게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에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리기한까지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공무원

제27조(감사공무원의 자격)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감사공무원 우대 및 추천) ①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재심의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하동군 자체감사 규칙」제24조에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중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2-104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관광진흥과)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614-83-00025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읍 광평리 453, 440-5		
목 적 및 면 적	395㎡		
최 초 허 가 일	2020년 6월 2일		
점 용 기 간	2020. 6. 5. ~ 2020. 6. 6.		
허 가 조 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6월 2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3. 본 점용으로 발생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 가자 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8.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3.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 - 10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하 동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신월2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450 일원	14	55	6	8.4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농업기반 055-880-2512~5)

하동군 고시 제2020 - 108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유역면적 (ha)	유효저수량 (천㎥)	제당높이 (m)			
호암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99-2	32	11.21	7.5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농업기반 055-880-2512~5)

하동군 고시 제2020 - 10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내용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 고
		유역면적 (ha)	유효저수량 (천㎥)	제당높이 (m)			
직전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970	19.2	10.46	2.73	하동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우동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36	18.45	11.49	3.6	하동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청용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46	40.12	118.04	11.0	하동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2. 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농업기반 055-880-2512~5)

하동군 고시 제2020 - 11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1-2외 1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6.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1-2	2020 0611		2009 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64-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3-16	2020 0611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 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7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769-59	2020 0611		2009 0702	행정구역명 (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6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62-17	2020 0611		2009 0702	행정구역명 (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47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8	2020 0611		2008 0402	계곡이 깊고 경관이 아름다워 중국의 무릉도화에 비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7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13-17	2020 0611		2009 0302	금성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로 금성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183-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7-70	2020 0611		2009 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7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251	2020 0611		2007 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7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7	2020 0611		2009 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548-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31-112	2020 0611		2008 0402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3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1-7	2020 0611		2008 0402	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연막윗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039-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2길 112-15	2020 0611		2008 0402	법정리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42-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6-5	2020 0611		2008 0402	주포 마을내 중앙길로 주포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44	20200611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3-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02	20200611		2008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하동군 고시 제2020-1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하 동 군 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강 영 *	주소	
소하천명		평당새미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진교면 고룡리 863(구) / 인접 : 진교면 고룡리 620(목)		
	면적	4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5. 27 ~ 2025. 5. 26 ※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진입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20-114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73-23		
법인명(대표자)	협동조합 노리터 (대표 장숙남)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194751-0003901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화개면 탑리 876, 덕은리 954		
목 적 및 면 적	15,000㎡		
최 초 허 가 일	2020년 6월 15일		
점 용 기 간	2020. 6. 15. ~ 2023. 6. 14.		
허 가 조 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3. 본 점용으로 발생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 가자 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8.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3.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20-1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이정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920번지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460.00㎡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년 06월 15일부터 2025년 06월 14일까지	
점용 · 사 용 의 유 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20-1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박용*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350번지 44호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15.00㎡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년 06월 15일부터 2025년 06월 14일까지	
점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당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20-117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1층		
법인명(대표자)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혜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194751-0003844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50,151,154,163,164,451-6		
목 적 및 면 적	900㎡		
최 초 허 가 일	2020년 6월 17일		
점 용 기 간	‘20.6.20.(1일간), ‘20.8.1.~2.(2일간), ‘20.8.15.(1일간), ‘20.9.5.(1일간)		
허 가 조 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3. 본 점용으로 발생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 가자 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8.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9.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3.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하동군 고시 제2020-11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서

사업시행자	성 명	이영*	생년월일	
	주 소			
개간장소	군	면	리	
	하동	청암	묵계	
개간의 용도	농지조성(고랭지 배추)			
승인면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대가
	산162-3	임	2085㎡	
지정착수시기	2018. 7. ~ 2020. 12. 30.			
공사비예정액	4,000만원			
승인조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6월 18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 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군	면	리	지번				㎡당	금액	주소	성명	
하동	화개	부춘	477	임야	5,841㎡	2,085㎡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20 - 120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09-48호(2009.12.7.), 제2010-44호(2010.12.31.), 제2011-34호(2011.8.1.), 제2012-68호(2012.12.27.), 제2013-48호(2013.9.6.), 제2014-50호(2014.6.18.), 제2016-36호(2016.2.25.), 제2017-34호(2017.2.27.), 제2017-209호(2017.12.28.), 제2018-70호(2018.5.16.), 제2018-214호(2018.12.28.), 제2019-234호(2019.12.20.)로 지정 및 변경 승인된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금성 조선농공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나. 면 적 : 145,335㎡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o 당 초 : 2009. 12. ~ 2020. 6.

o 변 경 : 2009. 12. ~ 2021. 6.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다. 변경사유 :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여건 침체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여건 악화 및 조선업 불황의 지속과 갈사만 산업단지의 공사 중단 및 대우해양조선의 입주포기로 입주예정기업의 사업성 결여 및 부지 확정측량 결정 지연에 따른 변경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 연장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비엔금성개발(주) 천 학 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답	도로	잡	전	제방	기타
필지수	88	34	16	26	7	2	3
면 적 (㎡)	145,335	48,112	4,659	73,909	2,040	4,475	12,140
구성비 (%)	100.0	33.1	3.2	50.9	1.4	3.1	8.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총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하동군	사유지	비고
필지수	88	8	1	10	69	
면 적 (㎡)	145,335	7,903	11,254	2,995	123,183	
구성비 (%)	100.0	5.4	7.7	2.1	84.8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672	9,875	1	284	3,010	2	388	6,934	-	-	-
중로	2	388	6,934	-	-	-	2	388	6,934	-	-	-
소로	1	284	2,941	1	284	2,941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농공단지내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농공단지내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4) 녹지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2,433	-	12,433	-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283	-	7,283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150	-	5,15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5) 상수도시설계획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484.4	계획용수량 : 484.4㎥/일
공 업 용 수	-	
생 활 용 수	484.4	

6) 오·폐수처리시설계획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계	56.8	계획오수량 : 56.8㎥/일
산 업 폐 수	1.8	
생 활 오 수	55.0	

7)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 고
계	8,14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586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계획(백만원)			비 고 (변경사유 등)
		국비	지방비	민자	
기 정	27,595	-	-	27,595	· 공사비 27,595백만원
변 경	27,595	-	-	27,595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기 정 (백만원)	변 경(백만원)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총 투자비	27,595	27,595	8,965	11,378	4,805	2,447
설 계 비	1,100	1,100	1,100	-	-	-
공 사 비	14,978	14,978	-	9,990	3,106	1,882
보 상 비	6,840	6,840	6,840	-	-	-
감 리 비	753	753	218	197	196	142
부 대 비	400	400	65	150	150	35
제세공과금	10	10	-	1	1	8
관 리 비	890	890	409	174	128	179
물가변동비	828	828	-	392	393	43
건 설 이 자	1,796	1,796	333	474	831	158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7,527	-	107,527	100.0
제 조 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107,527	-	107,527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실수요자 사용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실수요자 사용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하동군에 귀속
주차장	2,360	-	2,360	1.6	하동군에 귀속
공 원	7,760	-	7,760	5.3	하동군에 귀속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하동군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실수요자 자체관리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호선	B=15.0m	180.0m	하동군에 귀속	
	중로 2-2 호선	B=15.0m	208.0m	〃	
	소로 1-1 호선	B=10.0m	284.0m	〃	
	도로 L형 측구		1,237.0m	〃	
구조물	보강토 옹벽		83.0m	〃	
	L형 옹벽	H=1.5~5.5m	46.0m	〃	
우수	우수관로	D450	426.0m	〃	
	우수받이	TYPE-A,B	48EA	〃	
	우수연결관	D300	267.0m	〃	
	우수맨홀	GRP 1호	6개소	〃	
	접속T형관	D450X300	30개소	〃	
오수	오수관로	D200	79본	〃	
	오수맨홀	GRP 1호	11개소	〃	
	오수처리장		1개소	실수요자 자체관리	
상수	상수관로	D80	379.0m	하동군에 귀속	
	제수변		10개소	〃	
	소화전	지상식소화전	2개소	〃	
포장	ASP포장	#78	59.6a	〃	
부대	보도용난간	H1.0 X W2.0	66경간	〃	
전기	가로등		13본	〃	

14.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145,335	-	145,335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금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145,335	-	145,335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335	-	145,335	100.0	
산업시설용지	107,527	-	107,527	74.0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428	-	32,428	22.3	
도 로	9,875	-	9,875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433	-	12,433	8.6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672	9,875	1	284	3,010	2	388	6,934	-	-	-
중로	2	388	6,934	-	-	-	2	388	6,934	-	-	-
소로	1	284	2,941	1	284	2,941	-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농공단지내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농공단지내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다)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라) 녹지 결정조서

▢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2,433	-	12,433	-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283	-	7,283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150	-	5,15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12,907			112,907	
-	1BL	112,907	1BL-1	갈사리 204-1	76,877	산업시설용지
			1BL-2	갈사리 202-18	7,180	
			1BL-3	갈사리 202-1	5,470	
			1BL-4	갈사리 221-1	18,000	
			1BL-5	갈사리 204-6	4,680	지원시설용지
			1BL-6	갈사리 204-13	700	오수처리시설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BL-1 1BL-2 1BL-3 1BL-4	용도	• 허용용도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카'호 및 '타'호의 공장, '파'호의 창고시설 •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1BL-5	용도	• 허용용도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권장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1BL-6	용도	• 허용용도 -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제어요소	적용구간(위치)	계획내용	비 고
-	공공보행통로	산업시설용지내(중로2-2호선~완충녹지①)	• 다중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함 • 공공보행통로 폭 : 3m이상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7,760	-	7,760	
시설면적계		998	-	998	시설율 : 12.9%
건축면적	바닥면적	-	-	-	-
	연면적	-	-	-	-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760	-	7,760	
도로 및 광장	998	-	998	
녹 지	6,762	-	6,762	녹지율 : 87.1%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998	-	-	-	
기정	1	도로	-	743	-	-	-	
기정	2	중앙광장	-	117	-	-	-	
기정	3	휴게광장	-	138	-	-	-	

나)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6,762	-	-	-	
기정	-	녹지	-	6,762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417	743	-	-	417	743
소로	1류	기정	-	-	-	-	-	-
	2류	기정	-	-	-	-	-	-
	3류	기정	417	743	-	-	417	743

4) 세부도로조서

가)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17	743	-			
기정	소로	3	1	3.0	32	106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2	3.0	68	222	연결로	소로3-1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3	3.0	18	60	연결로	중앙광장	소로3-7	
기정	소로	3	4	2.0	31	69	산책로	소로3-2	소로3-5	
기정	소로	3	5	2.0	16	29	산책로	소로3-4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6	2.0	13	25	산책로	휴게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7	1.5	124	54	산책로	소로3-2	소로3-1	
기정	소로	3	8	1.5	115	178	진입로	서측경계	남측경계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20-1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박현*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65번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50.00㎡	
목적		휴식공간 등	
기간		2020년 06월 17일부터 2025년 06월 16일까지	
점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당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6월 24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공고 제2020-125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하 동 군 수

1. 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비고
합 계	**675,573,149,651**	**684,559,644,898**	**513,829,335,484**	**170,730,309,414**	
일반회계	577,749,726,011	585,582,348,762	479,601,456,548	105,980,892,214	
특별회계	97,823,423,640	98,977,296,136	34,227,878,936	64,749,417,200	

1-1.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비율(%) ㉰/㉯
합 계	**675,573,149,651**	**688,848,592,602**	**684,559,644,898**	**648,839,440**	**3,640,108,264**	**101.3**	**99.4**
일반회계	577,749,726,011	589,853,300,903	585,582,348,762	648,839,440	3,622,112,701	101.4	99.3
특별회계	97,823,423,640	98,995,291,699	98,977,296,136	0	17,995,563	101.2	100.0

1-2.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675,573,149,651**	**513,829,335,484**	**77,808,007,901**	**83,935,806,266**	**76.1**	**11.5**	**12.4**
일반회계	577,749,726,011	479,601,456,548	72,331,567,101	25,816,702,362	83.0	12.5	4.5
특별회계	97,823,423,640	34,227,878,936	5,476,440,800	58,119,103,904	35.0	5.6	59.4

1-3.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170,730,309,414**	**54,003,181,060**	**23,804,826,841**	**0**	**5,208,000,755**	**87,714,300,758**
일반회계	105,980,892,214	50,232,184,317	22,099,382,784	0	4,695,598,870	28,953,726,243
특별회계	64,749,417,200	3,770,996,743	1,705,444,057	0	512,401,885	58,760,574,515

2. 일반회계 결산

2-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비율(%) ㉰/㉯
합 계	**577,749,726,011**	**589,853,300,903**	**585,582,348,762**	**648,839,440**	**3,622,112,701**	**101.4**	**99.3**
지방세수입	19,340,000,000	23,113,479,930	21,056,012,030	646,741,070	1,410,726,830	108.9	91.1
세 외 수 입	17,993,622,000	26,195,365,879	23,981,881,638	2,098,370	2,211,385,871	133.3	91.6
경상적수입	7,021,559,000	7,777,812,939	7,278,311,069	0	499,501,870	103.7	93.6
임시적수입	10,972,063,000	18,417,552,940	16,703,570,569	2,098,370	1,711,884,001	152.2	90.7
지방교부세	248,094,000,000	250,633,540,200	250,633,540,200	0	0	101.0	100.0
조정교부금 등	26,170,000,000	25,960,013,000	25,960,013,000	0	0	99.2	100.0
보 조 금	174,273,199,000	174,271,515,360	174,271,515,360	0	0	100.0	100.0
국고보조금	140,941,579,000	140,932,204,000	140,932,204,000	0	0	100.0	100.0
도비보조금	33,331,620,000	33,339,311,360	33,339,311,36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878,905,011	89,679,386,534	89,679,386,534	0	0	97.6	100.0

2-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577,749,726,011**	**479,601,456,548**	**72,331,567,101**	**25,816,702,362**	**83.0**	**12.5**	**4.5**
일반공공행정	21,695,350,210	18,383,599,577	1,172,895,000	2,138,855,633	84.7	5.4	9.9
공공질서및안전	18,049,833,271	10,589,616,456	6,766,447,041	693,769,774	58.7	37.5	3.8
교 육	4,143,049,000	3,748,541,620	45,518,000	348,989,380	90.5	1.1	8.4
문화및관광	46,755,459,700	33,934,336,866	11,308,835,040	1,512,287,794	72.6	24.2	3.2
환경보호	40,924,192,760	35,220,863,483	4,199,481,250	1,503,848,027	86.1	10.3	3.7
사회복지	94,319,117,780	88,651,041,593	2,425,938,000	3,242,138,187	94.0	2.6	3.4
보 건	10,764,474,000	9,726,283,195	0	1,038,190,805	90.4	0.0	9.6
농림해양수산	130,682,640,080	99,834,944,701	22,401,330,150	8,446,365,229	76.4	17.1	6.5
산업·중소기업	70,346,847,590	67,682,172,133	1,617,968,000	1,046,707,457	96.2	2.3	1.5
수송및교통	33,620,099,860	23,552,992,650	8,786,742,863	1,280,364,347	70.1	26.1	3.8
국토및지역개발	48,574,890,760	34,013,044,340	13,600,711,757	961,134,663	70.0	28.0	2.0
과학기술	217,051,000	133,022,890	5,700,000	78,328,110	61.3	2.6	36.1
예 비 비	770,000,000	0	0	770,000,000	0.0	0.0	100.0
기 타	56,886,720,000	54,130,997,044	0	2,755,722,956	95.2	0.0	4.8

3. 특별회계 결산

3-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비율(%) ㉰/㉯
합 계	**97,823,423,640**	**98,995,291,699**	**98,977,296,136**	**0**	**17,995,563**	**101.2**	**100.0**
상수도사업	15,106,825,780	15,504,642,148	15,486,646,585	0	17,995,563	102.5	99.9
의료급여 기금조성	868,370,000	869,453,730	869,453,730	0	0	100.1	100.0
저소득 주민생활	0	95,745,696	95,745,696	0	0	0	100.0
주민소득 지원자금	408,943,000	397,049,690	397,049,690	0	0	97.1	100.0
농공지구 조성사업	178,925,000	179,436,169	179,436,169	0	0	100.3	100.0
발전소 주변지역	6,730,462,000	6,977,786,828	6,977,786,828	0	0	103.7	1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551,618,000	553,321,542	553,321,542	0	0	100.3	100.0
농업재해 복구자금	2,139,000	2,156,985	2,156,985	0	0	100.8	100.0
수질개선 기금	16,448,828,860	16,697,351,933	16,697,351,933	0	0	101.5	100.0
산업단지 조성	56,795,991,000	56,949,172,050	56,949,172,050	0	0	100.3	100.0
자활기금 운영	731,321,000	769,174,928	769,174,928	0	0	105.2	100.0

3-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	비율(%) ㉯/㉮	㉰/㉮	㉱/㉮
합 계	**97,823,423,640**	**34,227,878,936**	**5,476,440,800**	**58,119,103,904**	**35.0**	**5.6**	**59.4**
상수도사업	15,106,825,780	13,599,791,970	968,037,580	538,996,230	90.0	6.4	3.6
의료급여기금조성	868,370,000	837,558,880	0	30,811,120	96.5	0.0	3.5
주민소득지원자금	408,943,000	1,890,000	0	407,053,000	0.5	0.0	99.5
농공지구조성사업	178,925,000	89,931,420	0	88,993,580	50.3	0.0	49.7
발전소주변지역	6,730,462,000	3,055,119,968	0	3,675,342,032	45.4	0.0	54.6
중소기업육성기금	551,618,000	381,093,886	0	170,524,114	69.1	0.0	30.9
농업재해복구자금	2,139,000	0	0	2,139,000	0.0	0.0	100.0
수질개선기금사업	16,448,828,860	11,120,198,932	4,508,403,220	820,226,708	67.6	27.4	5.0
산업단지조성	56,795,991,000	5,112,293,880	0	51,683,697,120	9.0	0.0	91.0
자활기금운영	731,321,000	30,000,000	0	701,321,000	4.1	0.0	95.9

4.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288,459,266	463,368,800	1,457,175,350	993,806,550	2,751,828,066
재난관리기금	1,917,384,700	271,389,930	1,243,127,620	971,737,690	2,188,774,630
식품진흥기금	66,155,151	2,285,540	12,269,400	9,983,860	68,440,691
옥외광고정비기금	2,603,590	21,430	21,430	0	2,625,02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99,494,265	△11,291,490	793,510	12,085,000	88,202,775
하동군체육기금	202,821,560	200,963,390	200,963,390	0	403,784,950

5. 채권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3,321,008,879**	**585,324,980**	**979,614,640**	**2,926,719,219**
일반회계	1,872,044,110	210,000,000	415,330,000	1,666,714,110
특별회계	1,448,964,769	375,324,980	564,284,640	1,260,005,109
저소득주민생활	332,809,842	9,680,880	28,997,990	313,492,732
주민소득지원자금	348,151,430	90,206,600	157,773,400	280,584,630
발전소주변지역	768,003,497	275,437,500	377,513,250	665,927,747

6. 채무 결산

6-1. 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0,000,000,000**	**0**	**0**	**10,000,000,000**
일반회계	지방채무(차입금)	8,000,000,000	0	0	8,000,000,000
특별회계	지방채무(차입금)	2,000,000,000	0	0	2,000,000,000
상수도사업	지방채무(차입금)	2,000,000,000	0	0	2,000,000,000

6-2. 보증채무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7. 공유재산 결산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57,336	**670,667,002,953**	**1,402**	**28,527,989,654**	**225**	**11,313,004,958**	**158,513**	**687,881,987,649**
행정재산	156,376	664,326,607,363	1,375	28,448,953,938	212	11,294,394,379	157,539	681,481,166,922
일반재산	960	6,340,395,590	27	79,035,716	13	18,610,579	974	6,400,820,727

8. 물품 결산

(단위 : 원)

구 분	정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21**	**590**	**6,776,677,291**	**150**	**589,277,704**	**145**	**874,723,500**	**595**	**6,491,231,495**
업무용	521	590	6,776,677,291	150	589,277,704	145	874,723,500	595	6,491,231,495

9. 재무제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당해연도	**2,086,294**	**28,171**	**2,058,123**	**509,345**	**419,469**	**△89,876**
전년도말	1,992,726	26,415	1,966,311	451,803	469,531	17,727
증감	93,568	1,756	91,812	57,542	△50,062	△107,603

하동군 고시 제2020 - 12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28외 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2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6.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49-11, 748, 749-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28	20200629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3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416-64	20200629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 지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5-3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27	20200629		20070618	관곡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강변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7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124	20200629		20070618	옛 중국의 금릉 봉황대의 황자를 빼고 봉대로 명명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04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63	2020062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05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61	2020062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04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59	2020062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05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57	20200629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 2020 - 812호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6 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2조)

○ 조직·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설립 신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 포상 규정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하동군(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전화 055-880-2244, FAX 055-880-2019, mss288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읍·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하동군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되어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하동경찰서 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군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구입비 및 유류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비

3. 방범대 등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순찰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합회 구성 및 기능) ① 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합회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 등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동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동군 공고 제 2020 - 822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6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신설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4조)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6조)

○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하동군(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전화 055-880-2244, FAX 055-880-2019, mss288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하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 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 · 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과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 · 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하동군 공고 제 2020 - 932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 월 6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2.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 등'으로 넓게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

-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내부 공익자에 대한 구분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내부 공익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로 구분

○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이상으로 확대 (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055-880-2035, FAX 055-880-2019, e-mail cherishyou@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하동군 공직자 등”으로, “공무원 등의”를 “하동군 공직자 등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 공무원 등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로 한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3호 중 “공무원”을 “공직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동군 공직자 등---------- ---------- ---------- ---------- 하동군 공직자 등의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내부 공익신고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 ---------- -- 공직자 ---------- ----------
제4조(신고기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부조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3호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

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763호

하동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도시건축과(☎055-880-2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일

하 동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 등 군계획시설 (총 98개 시설)

나.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아래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참조

다. 사업시행기간

○ 1단계 : 2020년 ~ 2022년

○ 2단계 : 2023년 이후 시행

라.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마.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 : 붙임참조

[붙임]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 고시 일자	담당 부서	장기 미집행 시설 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계		98개소		627,250	165,516	3,604	6,842	4,579	3,338	3,666	143,487	-	-	-	-
1	대로3-1~ 중로1-1	대로2-1 (하동)	2-1~ 2-2	23,010	12,023	-	-	-	-	2,000	10,023	'12.2.9	도시 건축과	해당 없음	-
2	대로2-1~ 중로3-6	중로2-5 (하동)	2-2	2,261	1,229	-	-	-	-	-	1,229	'18.7.26	"	해당 없음	-
3	중로1-6~ 중로3-6	중로2-6 (하동)	2-2	5,063	1,480	-	-	-	-	-	1,480	'18.7.26	"	해당 없음	-
4	중로2-6~ 중로2-8	중로2-7 (하동)	2-2	2,791	781	-	-	-	-	-	781	'18.7.26	"	해당 없음	-
5	중로2-6~ 중로2-4	중로2-8 (하동)	2-2	3,255	781	-	-	-	-	-	781	'18.7.26	"	해당 없음	-
6	대로2-1~ 중로3-10	중로2-9 (하동)	1~2-1	1,174	414	-	-	207	207	-	-	'02.10.11	"	장기 미집행 시설	-
7	중로1-1~ 중로3-6	중로3-4 (하동)	2-2	4,634	1,371	-	-	-	-	-	1,371	'18.7.26	"	해당 없음	-
8	중로3-4~ 중로1-9	중로3-5 (하동)	2-2	2,059	695	-	-	-	-	-	695	'18.7.26	"	해당 없음	-
9	중로2-6~ 소로1-9	중로3-6 (하동)	2-2	8,475	2,550	-	-	-	-	-	2,550	'18.7.26	"	해당 없음	-
10	대로2-1~ 소로2-49	중로3-7 (하동)	2-2	1,073	561	-	-	-	-	-	561	'18.7.26	"	해당 없음	-
11	중로2-9~ 중로3-10	중로3-8 (하동)	2-2	2,898	1,089	-	-	-	-	-	1,089	'18.7.26	"	해당 없음	-
12	중로3-10~ 중로3-10	중로3-9 (하동)	2-2	2,496	696	-	-	-	-	-	696	'18.7.26	"	해당 없음	-
13	대로2-1~ 중로2-9	중로3-10 (하동)	2-2	7,195	2,269	-	-	-	-	-	2,269	'18.7.26	"	해당 없음	-
14	중로1-1~ 중로3-2	소로1-5 (하동)	2-2	6,854	2,256	-	-	-	-	-	2,256	'94.8.6	"	장기 미집행 시설	-
15	**대로2-1~ 읍내리 178-1**	**소로1-7 (하동)**	**1~ 2-1**	**1,280**	**969**	**-**	**323**	**323**	**323**	**-**	**-**	**'79.4.19**	**"**	**장기 미집행 시설**	**-**
16	중로3-4~ 소로1-7	소로1-9 (하동)	2-2	3,111	886	-	-	-	-	-	886	'18.7.26	"	해당 없음	-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단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고시일자	담당부서	장기미집행시설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17	대로2-1~ 중로2-8	소로1-10 (하동)	2-2	2,135	828	-	-	-	-	-	828	'12.2.6	도시건축과	해당없음	-
18	소로2-58~ 소로2-59	소로1-11 (하동)	2-2	804	245	-	-	-	-	-	245	'18.7.26	"	해당없음	-
19	중로2-8~ 소로2-59	소로1-12 (하동)	2-2	798	244	-	-	-	-	-	244	'18.7.26	"	해당없음	-
20	**중로2-1~ 읍내리 865-1**	**소로2-1 (하동)**	**2-2**	**488**	**344**	**-**	**-**	**-**	**-**	**-**	**344**	**'73.9.1**	**"**	**장기미집행시설**	**-**
21	**중로2-1 ~ 소로2-12**	**소로2-13 (하동)**	**2-2**	**1,400**	**2,064**	**-**	**-**	**-**	**-**	**-**	**2,064**	**'73.9.1.**	**"**	**장기미집행시설**	
22	**대로2-1~ 읍내리 156**	**소로2-17 (하동)**	**1**	**456**	**473**	**236**	**237**	**-**	**-**	**-**	**-**	**'02.10.11**	**"**	**장기미집행시설**	**-**
23	대로3-1~ 중로1-1	소로2-29 (하동)	1	4,008	2,489	829	830	830	-	-	-	'86.2.27	"	장기미집행시설	-
24	중로3-6~ 중로3-5	소로2-44 (하동)	2-2	772	174	-	-	-	-	-	174	'18.7.26	"	해당없음	-
25	중로3-5~ 소로2-46	소로2-45 (하동)	2-2	435	148	-	-	-	-	-	148	'18.7.26	"	해당없음	-
26	중로3-4~ 소로2-44	소로2-46 (하동)	2-2	855	199	-	-	-	-	-	199	'18.7.26	"	해당없음	-
27	중로3-4~ 소로2-44	소로2-47 (하동)	2-2	849	285	-	-	-	-	-	285	'18.7.26	"	해당없음	-
28	중로3-6~ 소로1-7	소로2-48 (하동)	2-2	198	55	-	-	-	-	-	55	'18.7.26	"	해당없음	-
29	중로2-5~ 소로2-32	소로2-49 (하동)	2-2	1,466	482	-	-	-	-	-	482	'18.7.26	"	해당없음	-
30	중로3-6~ 소로2-49	소로2-50 (하동)	2-2	473	162	-	-	-	-	-	162	'18.7.26	"	해당없음	-
31	중로3-6~ 소로2-49	소로2-51 (하동)	2-2	478	168	-	-	-	-	-	168	'18.7.26	"	해당없음	-
32	중로3-6~ 소로2-49	소로2-52 (하동)	2-2	555	198	-	-	-	-	-	198	'18.7.26	"	해당없음	-
33	중로3-6~ 소로2-49	소로2-53 (하동)	2-2	639	208	-	-	-	-	-	208	'18.7.26	"	해당없음	-
34	중로3-6~ 소로2-32	소로2-54 (하동)	2-2	524	159	-	-	-	-	-	159	'18.7.26	"	해당없음	-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 고시 일자	담당 부서	장기 미집행 시설 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35	중로3-6~ 소로2-32	소로2-55 (하동)	2-2	195	60	-	-	-	-	-	60	'18.7.26	도시 건축과	해당 없음	-
36	중로2-6~ 소로1-10	소로2-56 (하동)	2-2	791	202	-	-	-	-	-	202	'18.7.26	"	해당 없음	-
37	중로2-6~ 소로1-10	소로2-57 (하동)	2-2	621	190	-	-	-	-	-	190	'18.7.26	"	해당 없음	-
38	대로2-1~ 소로1-10	소로2-58 (하동)	2-2	821	169	-	-	-	-	-	169	'18.7.26	"	해당 없음	-
39	중로2-8~ 소로1-10	소로2-59 (하동)	2-2	1,620	483	-	-	-	-	-	483	'18.7.26	"	해당 없음	-
40	중로3-1~ 소로3-8	소로3-1 (하동)	2-2	1,992	459	-	-	-	-	-	459	'11.6.30	"	해당 없음	-
41	소로2-10~ 소로2-32	소로3-3 (하동)	2-2	414	234	-	-	-	-	-	234	'11.6.30	"	해당 없음	-
42	중로3-2~ 소로1-5	소로3-7 (하동)	1	624	258	-	129	129	-	-	-	'79.4.21	"	장기 미집행 시설	-
43	중로2-1~ 읍내리 900	소로3-9 (하동)	2-2	190	103	-	-	-	-	-	103	'11.6.30	"	해당 없음	-
44	소로2-12~ 읍내리 1549	소로3-21 (하동)	1~2-1	252	68	-	-	34	34	-	-	'02.1.17	"	장기 미집행 시설	-
45	대로2-101~ 중로3-6	중로2-2 (진교)	2-2	5,215	928	-	-	-	-	-	928	'11.6.30	"	해당 없음	-
46	중로3-2~ 중로3-1	중로3-4 (진교)	1~2-1	1,764	595	-	198	198	199	-	-	'77.1.26	"	장기 미집행 시설	-
47	중로3-1~ 중로3-5	중로3-7 (진교)	2-2	7,692	1,341	-	-	-	-	-	1,341	'11.6.30	"	해당 없음	-
48	중로3-5~ 관곡리 39-10	중로3-8 (진교)	2-2	6,672	1,121	-	-	-	-	-	1,121	'11.6.30	"	해당 없음	-
49	중로3-4~ 중로3-4	소로1-4 (진교)	1~2-1	3,410	913	-	304	304	305	-	-	'77.1.26	"	장기 미집행 시설	-
50	중로3-1~ 중로3-4	소로2-6 (진교)	1~2-1	1,000	617	-	205	206	206	-	-	'77.1.26	"	장기 미집행 시설	-
51	중로3-5~ 소로2-8	소로2-14 (진교)	1~2-1	3,880	1,696	500	398	399	399	-	-	'11.6.30	"	해당 없음	-
52	중로3-5~ 소로2-16	소로2-15 (진교)	2-2	438	554	-	-	-	-	-	554	'11.6.30	도시 건축과	해당 없음	-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 고시 일자	담당 부서	장기 미집행 시설 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53	중로3-6~ 소로2-17	소로2-18 (진교)	1	744	310	155	155	-	-	-	-	'11.6.30	"	해당 없음	-
54	중로3-1~ 관곡리 587	소로2-19 (진교)	2-2	792	116	-	-	-	-	-	116	'11.6.30	"	해당 없음	-
55	중로1-1~ 중로3-5	소로2-26 (진교)	2-2	812	285	-	-	-	-	-	285	'11.6.30	"	해당 없음	-
56	중로3-5~ 소로2-26	소로2-27 (진교)	2-2	1,124	339	-	-	-	-	-	339	'11.6.30	"	해당 없음	-
57	중로3-2~ 중로3-3	소로2-32 (진교)	2-2	972	511	-	-	-	-	-	511	'11.6.30	"	해당 없음	-
58	중로3-3~ 소로1-3	소로2-33 (진교)	2-2	390	229	-	-	-	-	-	229	'11.6.30	"	해당 없음	-
59	소로1-2~ 소로1-3	소로2-34 (진교)	2-2	208	191	-	-	-	-	-	191	'11.6.30	"	해당 없음	-
60	소로2-2~ 소로3-3	소로3-2 (진교)	1	90	97	-	48	49	-	-	-	'77.1.26	"	장기 미집행 시설	-
61	중로3-4~ 소로1-4	소로3-11 (진교)	1	756	180	-	90	90	-	-	-	'77.1.26	"	장기 미집행 시설	-
62	소로1-201~ 등촌리 452-1	중로1-121 (비도시)	2-2	17,670	8,000	-	-	-	-	-	8,000	'11.6.30	"	해당 없음	-
63	중로1-132~ 상이리 산352	중로1-122 (비도시)	2-2	32,640	12,000	-	-	-	-	-	12,000	'11.6.30	"	해당 없음	-
64	쌍계~ 대성리 산327-2	중로1-133 (비도시)	2-2	103,344	16,000	-	-	-	-	-	16,000	'11.6.30	"	해당 없음	-
65	탑리 628~ 탑리 587-2	중로2-101 (비도시)	2-2	2,078	337	-	-	-	-	-	337	'17.10.19	"	해당 없음	-
66	탑리 산 108-4~ 탑리 산72-9	소로1-101 (비도시)	2-2	3,592	526	-	-	-	-	-	526	'17.10.19	"	해당 없음	-
67	쌍계~ 운수리 865	소로2-103 (비도시)	2-2	2,436	3,000	-	-	-	-	-	3,000	'11.6.30	"	해당 없음	-
68	소로2-112~ 신성리 산92	소로2-111 (비도시)	2-2	1,136	4,000	-	-	-	-	-	4,000	'11.6.30	"	해당 없음	-
69	소로2-113~ 흥룡리 산80-1	소로2-114 (비도시)	2-2	2,600	1,500	-	-	-	-	-	1,500	'11.6.30	도시 건축과	해당 없음	-
70	소로2-114~ 동산리 633-3	소로2-115 (비도시)	2-2	20,320	20,000	-	-	-	-	-	20,000	'11.6.30	"	해당 없음	-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단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고시일자	담당부서	장기미집행시설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71	중로1-123~명호리 1461	소로2-117(비도시)	2-2	9,524	7,800	-	-	-	-	-	7,800	'11.6.30	"	해당없음	-
72	소로2-115~소로2-115	소로2-119(비도시)	2-2	1,612	235	-	-	-	-	-	235	'11.6.30	"	해당없음	-
73	소로2-127~운암리 157-10	소로2-128(비도시)	2-2	1,040	152	-	-	-	-	-	152	'11.6.30	"	해당없음	-
74	가덕리 1114~가덕리 1625	소로2-138(비도시)	2-2	5,584	4,543	-	-	-	-	-	4,543	'11.6.30	"	해당없음	-
75	양포리 산8-53~양포리 38-11	소로2-145(비도시)	2-2	1,900	303	-	-	-	-	-	303	'18.8.2	"	해당없음	-
76	화정리 산330-1~화정리 572-1	소로2-146(비도시)	1	4,613	1,000	1,000	-	-	-	-	-	'19.3.21	"	해당없음	-
77	읍내리 867	1호주차장(하동)	2-2	490	212	-	-	-	-	-	212	'11.6.30	"	해당없음	-
78	읍내리 449-3	2호주차장(하동)	2-2	54	49	-	-	-	-	-	49	'11.6.30	"	해당없음	-
79	진교리 228	3호주차장(진교)	2-2	900	393	-	-	-	-	-	393	'11.6.30	"	해당없음	-
80	비파리 668-1	18호주차장(하동)	2-2	1,121	294	-	-	-	-	-	294	'18.7.26	"	해당없음	-
81	비파리 259	19호주차장(하동)	2-2	8,343	1,814	-	-	-	-	-	1,814	'18.7.27	"	해당없음	-
82	진교리 570-3	14호주차장(비도시)	2-2	4,067	281	-	-	-	-	-	281	'19.3.21	"	해당없음	-
83	비파리 250	3호자동차정류장(하동)	2-2	1,573	392	-	-	-	-	-	392	'18.7.28	"	해당없음	-
84	청소년수련원~금오산전망대	1호궤도(비도시)	2-2	40,790	4,800	-	-	-	-	-	4,800	'17.1.26	"	해당없음	-
85	읍내리 1472	2호근린공원(하동)	1~2-1	42,586	5,255	-	1,313	1,314	1,314	1,314	-	'61.1.13	"	장기미집행시설	-
86	진교리 156	5호근린공원(진교)	1	28,349	3,016	610	2,261	145	-	-	-	'77.1.26	도시건축과	장기미집행시설	-
87	진교리 27-1	16호체육공원(진교)	2-2	113,335	10,060	-	-	-	-	-	10,060	'12.2.9	"	해당없음	-
88	읍내리 127-10	19호근린공원(하동)	2-2	12,258	2,465	-	-	-	-	-	2,465	'18.7.26	"	해당없음	-

연번	위치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백만원)						결정 고시 일자	담당 부서	장기 미집행 시설 여부	비고
						1단계			2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89	비파리 670-4	20호어린이공원 (하동)	2-2	3,958	865	-	-	-	-	-	865	'18.7.26	"	해당 없음	-
90	비파리 671-4	21호어린이공원 (하동)	2-2	3,515	818	-	-	-	-	-	818	'18.7.26	"	해당 없음	-
91	비파리 270-1	22호소공원 (하동)	2-2	631	155	-	-	-	-	-	155	'18.7.26	"	해당 없음	-
92	동산리 산246-10	21호역사공원 (하동)	2-2	4,980	883	-	-	-	-	-	883	'18.5.3	"	해당 없음	-
93	탑리 산87	22호역사공원 (하동)	2-2	4,980	573	-	-	-	-	-	573	'18.5.3	"	해당 없음	-
94	비파리 272	13호완충녹지 (하동)	2-2	1,052	272	-	-	-	-	-	272	'18.7.26	"	해당 없음	-
95	비파리 257	14호완충녹지 (하동)	2-2	1,531	372	-	-	-	-	-	372	'18.7.26	"	해당 없음	-
96	비파리 271-2	1호공공공지 (하동)	2-2	1,132	248	-	-	-	-	-	248	'18.7.26	"	해당 없음	-
97	읍내리 180-3	1호공공청사 (하동)	1~2-1	2,996	1,405	-	351	351	351	352	-	'90.1.8	"	장기 미집행 시설	-
98	읍내리 237-13	3호문화시설 (하동)	1	79	274	274	-	-	-	-	-	'18.11.1	"	해당 없음	-

하동군 공고 제2020-794호

불무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옥종면 북방리 불무마을지내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일

옥 종 면 장

1. 목 적 :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행정예고 기간 : 2020. 6. 02. ~ 6. 22.(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0. 6. 02. ~ 6. 22.(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설치장소

연번	위 치	시설수(개소)	카메라수	비고
1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9	1	2	
2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829-3	1	1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옥종면사무소(총무부서)**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6398)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옥종면사무소 총무계

- 주소 : (우 52313) 경남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옥종면사무소 총무계)
- 전화 : 055-880-6394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불무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지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옥종면장 귀하

하동군공고 제2020-803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기공고(하동군 공고 제2020-21호)하였으나 지장물 등의 누락 및 변경으로 인하여 재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05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다.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173-2 ~ 하동읍 비파리 760
라.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0.2km
마. 사 업 기 간 : 2020. 1. ~ 2020. 12.

2. 보상대상 : 토지(19필지, 3,165㎡) 및 물건(총 36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06.05. ~ 2020.06.20.(15일간)

4. 열람기간 : 2020.06.05. ~ 2020.06.20.(15일간)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② 위 치				
③ 사 업 시 행 자	하동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일련번호	소재지(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	감정평가 평균	보상금액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1	하동읍 읍내리	173-2	대	170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	서*경
2	하동읍 읍내리	173-4	대	165			하동군하동읍굴다리2길***	정*근
3	하동읍 읍내리	173-3	답	164			하동군하동읍 산복2길10***	남*태
4	하동읍 읍내리	174-1	답	11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	조*수
5-1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28*1/2			광양시진등2길13,***	이*호
5-2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28*1/2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	이*근
6	하동읍 읍내리	174-3	답	172			하동읍 광평리 ***	추*기
7	하동읍 읍내리	194-2	답	171			하동군하동읍광평리***	강*중
8	하동읍 읍내리	194-1	답	161			하동군하동읍 나루터길 ***	이*순
9-1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3*3/7			하동군하동읍읍내리***	강*순
9-2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3*2/7			거제시 아양동 ***	박*규
9-3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3*2/7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	박*훈
10	하동읍 읍내리	193-2	종교용지	16			이리시 신용동 ***	재단법인 원*교
11	하동읍 읍내리	193-4	종교용지	15			이리시 신용동 ***	재단법인 원*교
12	하동읍 광평리	2-3	답	370			하동군하동읍중서2길***	이*성
13-1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992/4198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	김*인
13-2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661/4198			진주시진양호로239번길13***	김*인
13-3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446/4198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	김*인
13-4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2099/419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최*순
14	하동읍 광평리	265-2	철도용지	402				국(국토교통부)
15	하동읍 광평리	80	철도용지	83				국(국토교통부)
16	하동읍 광평리	6-1	답	48			하동읍 광평리 ***	이*자
17	하동읍 비파리	743	답	280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	이*재

18	하동읍 비파리	760-4	대	8			하동읍 광평리 ***	강*중
19	하동읍 비파리	760	대	13			하동읍 광평리 ***	강*중
	합계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하동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평가가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단가				
							단가	금액		주소	성명
1	하동읍 읍내리	193-2 193-4	담장	벽돌철재1.5*15	22.5	㎡					재단법인 원*교
			바닥	보도블럭	4	㎡					
			청목	20년생	1	주					
			편백나무	R15	1	주					
2	하동읍 읍내리	193-3	울타리	철재 20*1.8	36						강*순, 박*규,박*훈
			출입구	철재7*2 기초포함	1	식					
			사무실	컨테이너3*9	1	식					
			물품이설비	-	1	식					
			바닥	콘크리트	100	㎡					
3	하동읍 읍내리	173-8	매실나무	R10	5	주					서*경
4	하동읍 읍내리	194-2	복숭아나무	R10 지지대포함	12	주					강*중
			암반관정	장옥포함	1	식					
			농업용전기		1	식					
5	하동읍 읍내리	173-4	가로등	철재 H:4	2	식					정*근
			가로등	철재(소형)	1	식					
			간판	철재1*4 H:4	1	식					
			조경석	이설	1	식					
			바닥	콘크리트 12*20	240	㎡					
			화단	자연석 4*12	48	㎡					
			화단	블록 1*10	1	식					
			소나무(조형)	R25	1	주					
			소나무(조형)	R8	1	주					
			소나무	R20	1	주					
			소나무	R8	1	주					
			소나무	R10	3	주					
			소나무	R5	1	주					
			영산홍	3년생	1	주					
			목련나무	R3	1	주					
			블루베리나무	5년생	1	주					

			동백나무	R15	1	주						
			동백나무	R3	1	주						
			동백나무 (조형)	R20	1	주						
			동백나무	R5	1	주						
			동백나무	R6	1	주						
			황칠나무	R15	1	주						
			마삭줄(조형)	R5	1	주						
			마삭줄(조형)	R2	9	주						
	합 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16호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여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8.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2. 신청기간: 20. 6. 19.까지

3. 신청자격: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서, 병연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상세기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첨부파일 참조

4. 의무사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5. 접수기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6.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7. 문 의 처: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55-880-2428)

8. 기타사항: 병무청의 인원배정 결과(2020.11～12월)에 따라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 (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021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table>
<tr><td colspan="3">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td><td>접 수
번 호</td><td></td><td>사 진
(반명함판)</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한자)</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2"></td><td rowspan="2">전 화
번 호</td><td colspan="2" rowspan="2">(지역번호:)
-</td></tr>
<tr><td>현 주 소</td><td colspan="2">(우편번호 :)</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2">학교 과
(졸업,중퇴,재학)</td><td>졸업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농 업 계
학 력</td><td colspan="2">학교 과(졸업,중퇴)</td><td>졸업(중퇴)
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정 착
사업장소</td><td>사 업 장
주 소</td><td colspan="3">(우편번호 :)</td><td>전 화
번 호</td><td>(지역번호 :)
-</td></tr>
<tr><td>주 사 업
작 목</td><td></td><td>부사업
작 목</td><td></td><td>경영
규모</td><td colspan="2">전 : 답 :
기타:</td></tr>
<tr><td rowspan="4">가족사항
(본인제외)</td><td>성 명</td><td>관 계</td><td>생년월일</td><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직 업</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td><td>년 월 일</td><td colspan="3">내 용</td><td colspan="2">수 여 자</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td><td>기간(연월일)</td><td colspan="3">내 용</td><td colspan="2">실시기관명</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영농경력</td><td>기간(연월일)</td><td colspan="3">내 용</td><td colspan="2">증명자확인</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able>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년도) 1/4분기	(년도) 2/4분기	(년도) 3/4분기	(년도) 4/4분기	(년도) 1/4분기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년도) 3/4분기	(년도) 4/4분기	(년도) 1/4분기	(년도) 2/4분기	(년도) 3/4분기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하동군 공고 제2020-867호

노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0. 6. 16.

하 동 군 수 (인)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일)	처리공법	처리구역(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노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196-2	45	JSBR 공법	9.6	분류식	2020.6.16.

❍ 방류수질

(단위 : mg/L)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설 계 수 질	195.7	72.3	173.4	45.4	4.4	150,000 이하
방 류 수 질	0.9	10	3.5	8.0	0.7	3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노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섬진강

2. 사용개시(공고)일

- 2020. 6. 16.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0 - 879호

공인 신조 공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7.

하 동 군 수

1. 공인 사용일 : 2020. 6. 17.
2. 신조사유 : 대송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원인지 부담금 보완에 따른 신조등록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 조	하동군산단조성과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한글전서체 3.0㎝ 정사각형		

하동군 공고 제2020 - 862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8.

하 동 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3-2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L=410.02m (전체 L=602m 중 금회 시행)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준 공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055-880-2238)

나. 공고기간 : 2020. 6. 18. ~ 2020. 7. 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위 치			지 적(㎡)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73-2	대	170	170	1식	서*경
2	하동읍 읍내리	173-4	대	797	165	1식	정*근
3	하동읍 읍내리	173-3	답	2,007	164	1식	남*태
4	하동읍 읍내리	174-1	답	1,319	110	1식	조*수
5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750	228*1/2	1식	이*호
6	하동읍 읍내리	174-2	답	2,750	228*1/2	1식	이*근
7	하동읍 읍내리	174-3	답	1,326	172	1식	추*기
8	하동읍 읍내리	194-2	답	2,691	171	1식	강*중
9	하동읍 읍내리	194-1	답	1,997	161	1식	이*순
10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3/7	1식	강*순
11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2/7	1식	박*규
12	하동읍 읍내리	193-3	답	1,190	113*2/7	1식	박*훈
13	하동읍 읍내리	193-2	종교용지	1,058	16	1식	재단법인 원*교
14	하동읍 읍내리	193-4	종교용지	628	15	1식	재단법인 원*교
15	하동읍 광평리	2-3	답	370	370	1식	이*성
16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992/4198	1식	김*인
17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661/4198	1식	김*인
18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0	476*446/4198	1식	김*인
19	하동읍 광평리	2-8	답	476	476*2099/4198	1식	최*순
20	하동읍 광평리	265-2	철도용지	7,032	402	1식	국(국토교통부)
21	하동읍 광평리	80	철도용지	17,456	83	1식	국(국토교통부)
22	하동읍 광평리	6-1	답	1,954	48	1식	이*자
23	하동읍 비파리	743	답	3,140	280	1식	이*재
24	하동읍 비파리	760-4	대	362	8	1식	강*중
25	하동읍 비파리	760	대	660	13	1식	강*중

주민의견 제출서

안건	하동군계획시설【도로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10호선 1공구)】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의견제출자	성명	Tel)
	주소	
주민의견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 863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8.

하 동 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 명 칭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239m, B=1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준 공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바. 관계도면 : 실음 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055-880-2238)

나. 공고기간 : 2020. 6. 18. ~ 2020. 7. 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위 치			지 적(㎡)		지장물	소 유 자
	읍 면	지 번	지 목	총지적	편입면적		
1	하동읍 읍내리	174-3	답	1,154	282	1식	추*기
2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김*우 지분 1,028/2020
3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강*성 지분 496/2020
4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김*이 지분 248/2020
5	하동읍 읍내리	187-3	답	2,020	539	1식	천*희 지분 248/2020
6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전*구 지분 1157/2453
7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조*임 지분 800/2453
8	하동읍 읍내리	188-1	답	2,453	136	1식	진*곤 지분 496/2453
9	하동읍 읍내리	188-2	답	1,540	351	1식	황*덕
10	하동읍 읍내리	190-2	답	836	185	1식	이*희
11	하동읍 읍내리	190-3	답	1,190	267	1식	박*재 지분 1/2
12	하동읍 읍내리	190-3	답	1,190	267	1식	박*철 지분 1/2
13	하동읍 읍내리	191-1	답	2,010	517	1식	권*순
14	하동읍 읍내리	194-2	답	2,521	617	1식	강*중

주민의견 제출서

안건	하동군계획시설【도로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3-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의견제출자	성명	Tel)
	주소	
주민의견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 883호

2021년도 어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제21조에 의거 **2021년도 어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 개 요

1. 신청자격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1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할 수 있다.

2. 모집기간 : 2020. 6. 22(월) ~ 7. 6(월) / 15일

3. 접수기관 : 하동군청 해양개발담당 ☎ 055-880-2443

4.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및 영어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 시 주민등록증 지참

○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진 (반명함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본적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수산계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칸추가가능		
	정 착 사업장소	사업장명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소재지		업무
		주사업 업종		주사업 업종
		경영규모 (전,답,기타)		전화번호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격취득경력	년 월 일	자격·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장학금, 포상 관련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영어교육 훈련 경력 (총교육일수:)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영어경력	년 월 일	내용	증명자 확인

「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o 첨부서류 : 1. 영어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영어사업 계획서

1. 현 황

(단위:척,대,개,천원)

	구 분	품 목	규 모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조수입)
영 어 규 모	어 선 어 업				
	증 · 양식업				
	종 묘 생 산				
	수 산 가 공				
	내 수 면				

시 설 · 장 비	어탐기	로 란	레이다	통신장비	양망(승)기	나침의	해 도
	사료저장고	현미경	발전기	양수기	MP제조기	고압세척기	정화조
	보일러	산소공급기	수온자동조절기	저수탱크	자동채취기	건조기	해수교반기
	자동결속기	초재기	탈수기	호이스트	콤베어	플랑크톤네트	사료분쇄기

2. 사업계획

◦ 향후 영어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영어 사업계획서는 어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하되 평가기준 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 - 9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경감
2. 행정예고기간 : 2020. 7. 3. ~ 7. 23.(20일간, 공휴일포함)
3. 의견제출기간 : 2020. 7. 3. ~ 7. 23.(20일간, 공휴일포함)
4.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계항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금성면 궁항리 일원	침수위험 고립위험 지구	나	452,800	하류 하천 섬진강, 주교천 수위 상승시 내수 배제 불량 및 진정천 제방, 도로가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및 고립위험 예방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계항지구	2021~2024	42,369	- 제방도로 숭상(2차선) : L=3,000m - 제방 증고 : L=2,900m, 교량 3개소 -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1식	

※ 사업 시기 및 내용은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55) 880-2253

· 팩 스 : 055) 880-224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1. 지형도면(안) 1부

2. 주민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지형도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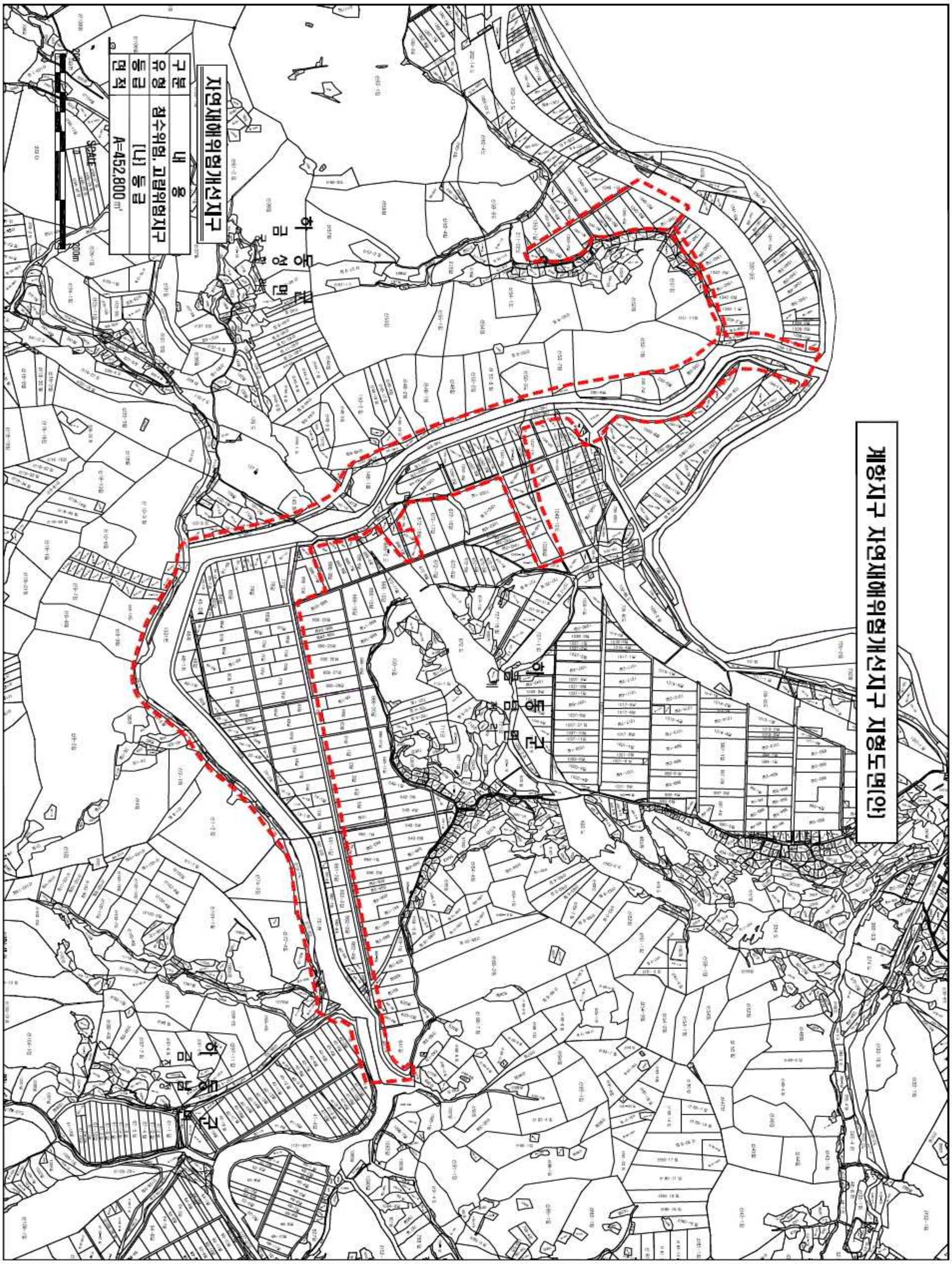
계항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 분 | 내 용
유 형 | 침수위험, 고립위험지구
등 급 | [나] 등급
면 적 | A=452,800 ㎡
SCALE
하동군 금성면
하동군 고전면
하동군 금남면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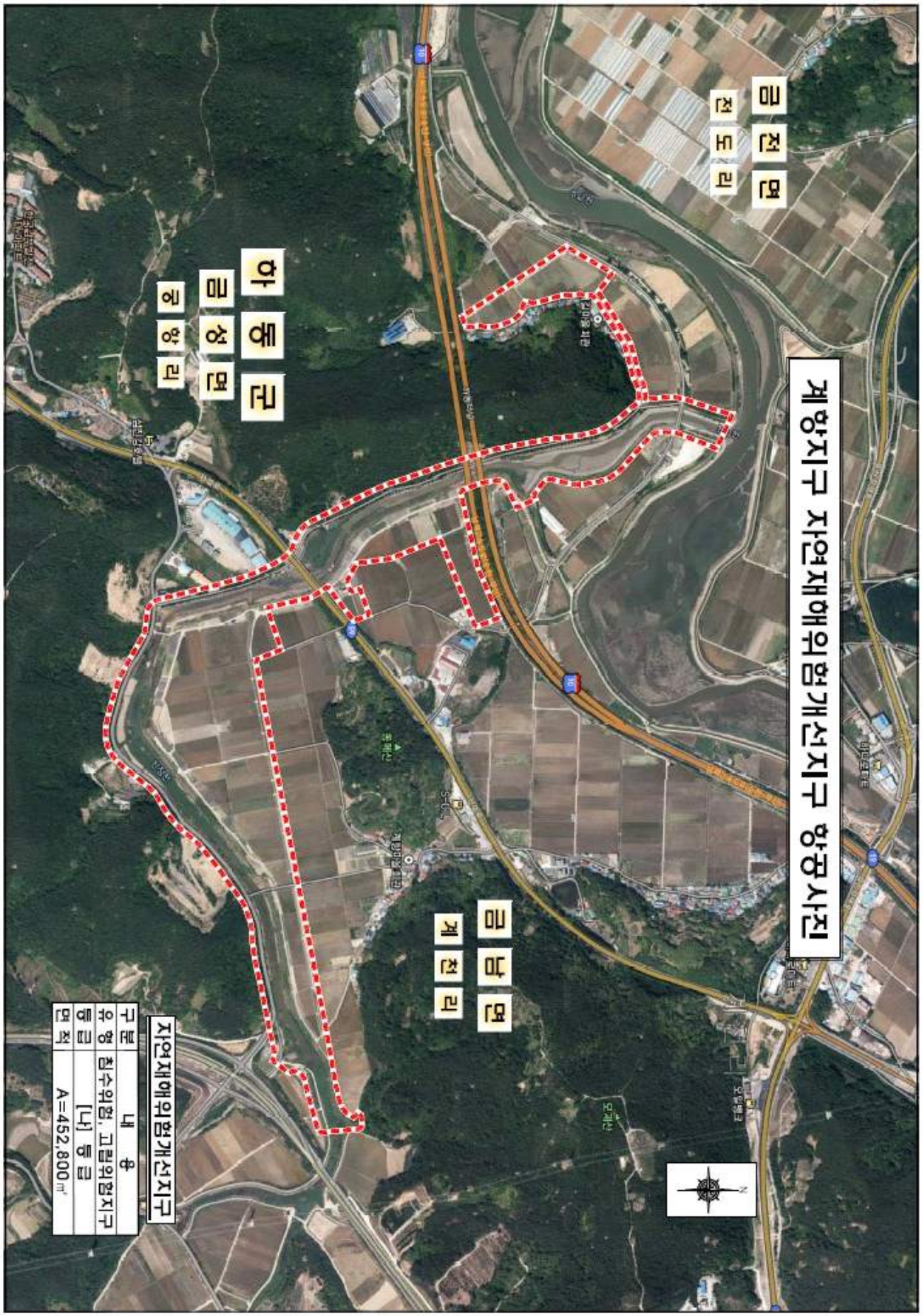
계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항공사진
금 전 면
전 도 리
하 동 군
금 성 면
공 항 리
금 남 면
계 천 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 분 내 용
유 형 침수위험, 고립위험지구
등 급 [나] 등 급
면 적 A=452,800㎡

[붙임2]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계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 924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 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마을어업 제27호	마을어업	마을어업	굴 등	금남면 노량리 지 선	1.7	2020.07.02	2020.07.02 2030.07.01	신 노 량 어촌계장	신규개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